

울산지방법원 2020. 5. 7 선고 2019가단731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영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혁빈

변론 종결 2020. 4. 2

판결 선고 2020. 5. 7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1,000,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19. 3. 12.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3,100만 원을 송금하였다.

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,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.

2. 판단

을 1내지 1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 사정들, 즉 피고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을 하였던 점, 피고는 2019. 3. 초경 예라는 자로부터 비트코인 구매대행을 의뢰받은 점, 위 C은 2019. 3. 12. 원고에게 3,100만 원을 입금할테니 수수료 31만 원을 제외한 3,069만 원을 충전한

후 자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비트코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그 날 원고 명의로 3,100만 원을 입금받은 점, 피고는 C의 요청대로 위 돈으로 3,096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이 보내준 출금주소로 보내주었고 C은 위 비트코인을 출금한 점, 그 과정에 원고가 입금한 위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, 피고가 원고가 송금한 위 3,1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해 송금된 돈인 점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, 원고가 위 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윤원묵